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도로법」 제59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운행제한(과적)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위반내용 : 도로법 제59조(차량의 운행제한)
3. 근거법규 : 도로법 제101조 , 도로법 시행령 제74조
4.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: 김대호(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)
5. 공고기간 : 2012.01.02. ~ 2013.01.16.(15일간)
6. 기타사항 :
 - 가.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오며,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』에 따라 과태료 체납 처리되어 가산금(가산금 5% 및 증가산금 매월 1.2%씩 60개월까지 최대 77% 부과)이 부과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함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의처 :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(☎ 054-270-6406)

2013. 01. 02.

포항시 남구청장

